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등 근거 명시〉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0469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의 근거 명시	2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46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10. 15.
- (3) 회 부 일 : 2024. 10.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의 근거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 내용 및 지정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인권교육) ① <u>노숙인시설</u> 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u>위한 교육</u>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u>노숙인시설</u> ----- ----- <u>위한 인권교육</u> (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u>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u>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
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인
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20조의2(보수교육)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 설>

<신 설>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u>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u> <u>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기관의 지정 절차·방법 및 보 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2023년 기준, 전국의 노숙인시설은 총 139개소,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총 1,940명으로 집계됨.

< 시·도별 노숙인시설 현황 >

(’23.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39	48	13	9	6	3	8	1	1	15	7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구,상담보호센터)	13	3	3	1	-	1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	2	-	-	-	-	-	-	-
자활시설 (구,노숙인쉼터)	46	19	3	4	1	1	4	1	-	6	2	1	1	2	-	1	-	-
재활·요양시설 (구,부랑인시설)	55	13	4	2	4	1	1	-	1	4	3	3	-	3	7	3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진료시설	3	2	1	-	-	-	-	-	-	-	-	-	-	-	-	-	-	-
급식시설	4	2	-	-	-	-	-	-	-	2	-	-	-	-	-	-	-	-

< 노숙인 시설 종사자 현황 >

(’23.12월말 기준, 단위: 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1,940	126	90	56	547	373	89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68	39	11	34	7	49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설비기사	촉탁의
49	275	30	31	23	18	25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인권교육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촉탁의를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촉탁의¹⁾ 및 시설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 방문, 원격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법인·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 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노숙인시설 운영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음.²⁾

1) 촉탁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진단 및 질병 치료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시범 실시

- 시설 운영전략, 사례관리 심화, 사례관리 기초 등 3개 과정, 10회

('23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과정 확대 실시

- 노숙인 이해, 전략수립, 사업관리, 사례관리, 정신장애 등 5개 과정, 19회

<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 >

과정명	교육 내용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이해, 초기 상담 및 사정,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직·간접 실천 등
노숙인 사례관리 심화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단계별 핵심과업, 강점기반 사례관리 접근방법, 실무연습 발표 등
노숙인 정신장애의 이해과정	조현병 및 기분장애 개념, 알콜중독자 특성 및 치료, 인격장애 유형별 행동전략 등
노숙인시설 맞춤형 기획과정	홍보 콘텐츠 제작, 공문서 작성법, 슬기로운 직장생활 등 시설 수요 맞춤형과정 운영
노숙인 상담 실무과정	상담의 실천원칙, 상담 기초기술(라포형성기법, 감정과 욕구의 이해 및 공감화 연습), 아웃리치 등

□ 인권교육은 노숙인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반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수교육 이수 시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³⁾을 면제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를 근거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임의적 법 집행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관련 지침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면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지침)

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라고 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도 실시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대해서도 인권교육기관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동 기관은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인권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으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한국자활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을 면제받을 수 있어, 각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관련 단체는 노숙인복지법에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근거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